예 산 총 칙

2023년도 추경1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	회	계	별	세입ㆍ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계				950,531,000	28,515,930
	일	반	회	계	923,800,000	27,714,000
	일	반	회	계	923,800,000	27,714,000
	특	별	회	계	26,731,000	801,930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		별회계	1,670,000	50,100
	习す	지하수관리특별회계			440,000	13,200
	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				11,626,000	348,780
					145,000	4,350
	주차장특별회계				12,850,000	385,500

- 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-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,367,693천원으로 한다. (일반예비비 5,307,148천원, 목적예비비 7,060,545천원)
-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7,0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